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etnam: Country-by-country reporting part of expande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guidelines](#)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한 시행령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본 시행령(Decree No. 20/2017/ND-CP (24 February 2017)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의 문서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7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본 시행령에 추가된 이전가격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보고서(CbCR) 작성대상 및 요건

- 베트남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CbCR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 베트남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 연결매출액이 약 9,000억 원(18조 VND) 이상인 경우;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0 March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법인세 신고 기한 전(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까지 베트남어로 구비하며 과세당국 요청 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제출;
- 세무조사 착수 전 협의 절차(Consultation Procedure) 기간 동안 과세당국이 서면을 통해 제출 요청 시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조사면제(Safe harbor) 규정

본 시행령은 베트남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제출 면제 기준금액(thresholds)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면제 기준은 다음을 충족시키는 납세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매출액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약 25억 원(500억 VND)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약 15억 원(300억 VND)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통상적인 기능("Routine Function")만을 수행하며 무형자산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납세자** -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약 100억 원(2,000 억 VND)을 초과하지 않으며, 영업이익률("OM")이 해당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 판매업자- 5%;
 - ✓ 제조업자- 10%;
 - ✓ 무상 사급업자(Toll Manufacturer)- 15%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의 경우

이전가격관련 원칙 및 규정 신설

I. 이전가격관련 원칙 신규 도입

- 과세관청은 계약 상 거래형식에 대한 검토기준 초과 시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Principle)을 적용;
- 독립기업간 거래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비교가능성 기준 방안 마련;

- 무형자산의 기능, 위험, 자산 부담 주체에 대한 기준 강화

- 개발, 강화, 유지, 보호 및 사용(DEMPE) 기준

II.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의 개정

- 매출 및 매입(input and output)을 통제하는 현행 특수관계자 정의 폐지(예: 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거래 비중 50% 이상 조건);
-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 자본의 출자관계;
- 자금의 대여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부채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 의결권 보유 또는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이전가격세제와 관련된 주요 행정 사항들

I. 이전가격방지를 위한 감사

2016년, 84,472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추가적인 약 8조 5천억원(171조 VND) 규모), 특히 이전가격거래와 관련하여 329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된 세액 및 가산세는 약 304억 원(6,075억 VND)이며, 약 2,800 억 원(5조 6천억 VND)의 세무상 결손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이전가격세제 재검토 기준

정상가격 원칙을 위배한 특수관계자 거래(Non-arm's length) 및 이전가격 문서화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 경정(Reassessment)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III.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Underpayment penalties)는 납세 기간에 따라 과소납부분 세액의 10~20% 및 연체된 기간의 이자 상당 가산액(연체 하루당, 0.05~0.07% 적용, 2016년 7월 1일 이후 연체분 0.03% 적용)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탈세

에 대한 벌금(미납세액의 1~3배)은 위법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South Korea Aims to Propose Hybrid Mismatch Rules by 2018](#)

(Bloomberg BNA_Vol25 No.21)

2018년내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해소 방안에 대한 법안 제출 목표

기획재정부의 고위관계자는 향후 2년 내에 다국적 기업의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해소 방안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Bloomberg BNA 에 밝혔습니다.

혼성불일치거래는 국가간 세제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이중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편법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성불일치거래로 발생하는 이중비과세 혜택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있는 BEPS Action Plan 2 의 권고사항을 따라 혼성불일치규정을 입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이재목 과장은 "법안의 발의가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인해 도입시키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Bloomberg BNA 에 전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발의되어 관련법에 반영되기까지 약 6 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 시기는 2018~2019 년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제도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혼성불일치거래 사례가 더 많으며 한국은 중국, 일본과 유사한 조세제도(Tax System)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혼성불일치거래로 인한 조세회피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로 인한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이중비과세로 인한 조세회피 대처방안으로 법안이 발의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loomberg BNA 의 BEPS Tracker 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혼성불일치규정 도입에 대한 예비적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Back to top](#)

[London Stock Exchange Warns on U.K. 'Google Tax' Charge](#)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이하 "LSE")은 2016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 부과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SE는 우회수익세 및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약 62억 원(4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우발부채(uncertain tax positions)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2015년에 도입된 우회수익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세제가 다른 점을 악용하여 영국 내 경제활동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구글세는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미국의 IT기업(technology company)들이 복잡한 조세구조(tax arrangement)를 이용하여 영국 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데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경우 이전된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영국 Pinsent Masons의 택스 파트너인 Heather Self는 LSE의 우회수익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기존에 문제되었던 IT기업이 아닌 LSE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우회수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국 과세관청이 우회수익세에 대해 예상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ow-Tax Locations

BDO의 Malcolm Joy에 따르면, 영국 과세관청은 LSE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룩셈부르크 및 버뮤다 같은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적법한 사유가 있을지라도 우회수익세 조사의 일환으로 저세율 국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EPS Action 7

영국의 우회수익세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와 상통합니다. 이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BEPS문제를 해결하고자 20개국과 협력하여 15개의 BEPS 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 BEPS Action 7을 통해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OECD는 기업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은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핵심 사업활동이 아닌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예로 회사가 단순히 창고 운영을 하는 것은 고정사업장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Bloomberg BN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2월 영국은 이러한 OECD의 광범위한 고정사업장 정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회수익세 14억 파운드

영국 과세관청은 2020년까지 약 1.9조 원(14억 파운드)의 우회수익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의 우회수익세율은 현행 법인세율보다 5% 더 높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국의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017년 4월에 19%로 인하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